

법령명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공포번호

법률 제7362호

공포날짜

2005/01/27

[공포일자 :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

- (1)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너무 오래된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3)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4)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합리적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법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 (1)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2)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감사결과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1항).
- (3) 주민소송의 청구유형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함(법 제13조의5제2항).
- (4) 주민소송은 감사결과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도록 함(법 제13조의5제4항).
- (5) 주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른 주민이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5항 내지 제7항).
- (6)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의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5제16항).
- (7) 판결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함(법 제13조의6).

(8)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효과가 증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현행 제41조제2항 삭제)

(1) 지방분권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위법한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통제강화(법 제159조제7항)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대법원 제소로 다룰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및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법질서와 자치법규간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 내지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